

		시 민			
문서번호	서북병원진료부-111	주무관	진료행정팀장	진료부장	서북병원장
결재일자	2014. 1. 6.	김대하	강정원	서해숙	01/06 김한선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조기현
방침번호		원무과장			

2014년 임상연구논문 및 연구비 지급 계획



2014. 01

서북병원 진료부

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예시 :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) 무 ■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우리말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증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
2014년 임상연구논문 및 연구비 지급 계획

임상연구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병원 진료수준 향상과 환자에 대한 질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■ 근거

-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(제5068호, 2011.01.13)
-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에 관한 규칙2조(제3145호, 2000.11.06)

■ 목표

- 임상연구를 통한 의료지식 함양과 의료진의 수준향상
- 내실있는 임상연구를 통하여 의학발전 도모 및 환자에 대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제공

■ 세부추진계획

- 연구기간 : 2014. 1. 1 ~ 12. 31 (12개월)
- 논문집 발간 : 2015. 1. 1 ~ 2. 28
- 연구 참가대상 : 의사 29명 (2014. 1. 1 현재)

○ 일정별 세부추진계획

일 정	추진내용	근거
2014. 1월	2014년도 임상연구 계획서 제출	규칙 제3조 ①항
2014. 1월	임상연구계획서 설명회	규칙 제4조
2014. 1월	진료위원회 심의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승인	규칙 제3조 ②항
2014. 6월	임상연구 과제 중간발표회	규칙 제4조
2014. 12월	임상연구 과제 최종발표회	
2015. 2월	임상연구 보고서집 발간	

※ 내실있는 임상연구가 되도록 임상연구계획서 설명회, 중간발표회, 최종발표회를 개최

■ 임상연구비 지급

○ 지급대상

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 중 의사로서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상진료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병원장이 임상연구자로 승인한 자

○ 지급액

–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름

임상연구비지급표		
구 분	급 류 별	월지급한도액
의료직(의사)	2~3급	300,000원
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의사	가 급	500,000원
	나 급	300,000원
비 고		
1.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의사 가급의 공동 과제 임상연구비는 과제당 월 500,000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		
2.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의 전임계약직공무원 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.		

○ 지급한도

-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규칙 5조 및 별표1에 따름

연구기간	지급한도액
6개월미만	해당연구비의 50%미만
6개월이상 9개월미만	해당연구비의 50%이상 ~ 75%미만
9개월이상 12개월	해당연구비의 75%이상 ~ 100%이내

○ 지급방법

- 임상연구의 공동과제별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
- 임상연구 기간이 연 3개월 미만인 자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연구기간 산정은 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최종보고서 월까지로 한다.
- 동일인에게는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의원면직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직할 경우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고, 그동안 진행된 임상연구 논문 내역을 제출해야한다.
- 임상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임상연구계획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당해 연도에 완성하여야 한다.
- 매월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임상연구비를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원무과로 임상연구비 청구

■ 행정사항

-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자 승인 후 5일 이내에 임상연구비 지급계획서를 보건정책과로 제출
- 2014년 1월 : 임상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보고서 본청 보건정책과 제출. 끝.